

# 전주시 유·초등교원 인사 관리 기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관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안정된 위치에서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전주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교감, 공립유치원 원감(이하 교·원감)과 초등학교 교사, 특수교사, 보건 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공립유치원 교사(이하 교사)에 적용한다.

<개정 2017.8.3. 2018.3.1.자 인사부터 적용>

제3조(방침)

- ① 모든 학교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학교(유치원) 선택의 폭을 넓힌다.
- ② 안정된 가운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본인의 희망과 전보서열부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한다.
- ④ 동일교 다경력자를 우대한다.
- ⑤ (삭제)

## 제 2 장 전 보

제4조(전보)

- ① 교(원)감 및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받아 전보서열부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단 남녀 별도 서열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8.19>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제5조(전보의 시기) 교(원)감 및 교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전보 내신한다. 단 교·원감은 정원 변동, 결원보충 등 불가피한 때에는 9월 1일자로 전보 희망할 수 있다.

#### 제6조(근무기간)

- ① 동일교 근무기간은 전주시 근무연한의 1/2 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단 1학기말 해당 교사는 학년말까지 유보할 수 있다.
- ② 학기 도중 전입자는 전입일 이후 학기 초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한다.
- ③ 농어촌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한다.

#### 제7조(전보의 제한)

- ①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 실험)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는 연이어 도지정 이상 연구(시범, 실험)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삭제 2014.7.17. 2015.3.1.자 인사부터 적용>
- ② (삭제)
- ③ 교사 정원의 2/3를 초과하여 전보할 수 없다.(단 순환전보 대상자는 가능하며 유치원의 경우 6학급 이상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0.8.19.>
- ④ 농어촌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은 연이어 농어촌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6.8.5. 2017.3.1.자 인사부터 적용>

#### 제8조(전보 대상)

- ① 교·원감<개정2017.12.26. 2018.9.1.자 발령자부터 적용> 및 교사는 동일교 근속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대상으로 한다. 단,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의 교감은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교 근속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대상으로 한다.
-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 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7. 2015.3.1.자 인사부터 적용>
  1. 해당 연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5. 폐교 및 학급감축, 정원감축(과원조정 포함)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6. 교권을 침해당한 자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자

## 7. 기타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

### 제8조의 2(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전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교원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전입요청은 교사정원의 5%이내에서 단위학교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되, 전주시 근무경력 5년 이하인 자로 학교당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도별로 1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제9조(전보의 유예)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주시 근무제한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감, 2년 미만인 교사는 잔여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정년 잔여 유예자를 제외하고 학교당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농촌동학교 유예 불가)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비경합 학교에서 우리 시 근무 제한 연한 1년을 앞두고 있는 자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1년 동안 전보유예 요청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8.19.>>
  1. 체육지정 종목 육성에 공이 있는 자
  2. 특수학급 담당 희망자가 없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
  3.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⑦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전보의 우대) (삭제)

### 제11조(전보서열부 작성)

- ① 교사의 전보서열부는 경력점과 우대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8.3. 2018.3.1.자 인사부터 적용>
- ② 경력점은 우대가산점보다 비중을 크게 부여한다. 경력점은 전주시 초등학교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산정하며 계산방법은 '별표 1'의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8.3. 2018.3.1.자 인사부터 적용>

- ③ 삭제
- ④ 삭제
- ⑤ 동점자 처리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14.7.17. 2015.3.1.자 인사부터 적용>
  1. 동일교 장기근무자
  2. 교육경력이 많은 자
  3.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12조(전입 및 신규임용자 임지 배치)

- ① 관내전보를 우선하고, 3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희망시 신규교사 우선 배치, 전주시내 특수학교 전입자, 전주시내 국립학교 전입자, 타시군 특수학교 전입자, 타시군 전입자, 타시군 국립학교 전입자, 타시도 전입자, 신규임용자 순으로 배치한다.
- ② 전입자는 전입서열순과 주소지를 참작하여 배치한다. 단 남·여 수와 신규임용자 수, 특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신규교사 비율이 단위학교 교사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학기 중 신규 임용할 경우 또는 교원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전보의 특례)

- ① 2013년 3월 1일 이후 국내 파견교사(시·도간 교류 파견교사 제외)의 파견기간은 전주시 및 동일학교 근무경력에 포함한다. 단, 2013년 2월 28일 현재 파견 중인 자 중 희망하는 자는 전주시 및 동일 학교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폐교, 학급감축, 정원조정(과원교사포함)의 사유로 부득이 전보된 자는 현 임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희망이 있으면 전보할 수 있으며, 전보 전·후 학교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기간에 산정할 수 있다.
- ③ 휴직자가 휴직 전 근무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복직 할 경우 복직 전·후 경력을 합산하여 동일교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4.7.17. 2015.3.1.자 인사부터 적용>
- ④ 파견교사(교환교사)가 복귀하거나 휴직교사가 복직 시 원적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없을 경우에는 만기자에 준하여 배치한다.
- ⑤ 특수학교(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수교사로 임용된자를 우선 전보한다.

<2017.3.1.자 부터 적용>

- 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종에 의한 중증장애인 교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2017.3.1.자 부터 적용>

제14조(유치원방과후과정 정교사배치)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정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개정 2020.8.19.>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별표 1>

## 교사·교(원)감 전보서열부 작성 평정기준

### 1. 경력점(동일교 최근 5년 실적) <개정 2015.7.21.>

가. 유·초등교사 경력점 산정 방법<개정 2019.8.19.>

구 분	근 무 경 력 점				비고
	최초1년 기본점	월 가산점	1년 가산점	근속누적가산점	
가	폐지	0.167	2	해당교 근속 1년당 1점씩 누적가산 (상한점5점)	
나		0.208	2.5		
다		0.250	3		
라		0.292	3.5		

- 적용시기: 2021. 3. 1자 인사부터 즉시적용, 경과조치 없음
- ※ 근속누적 가산점은 근무년수를 총 합산하여 계산함
-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함.

나. 보건교사 경력점 산정 방법

구 분	근 무 경 력 점			비고
	최초1년 기본점	월 가산점	1년 가산점	
가	60	0.5	6	
나	57	0.34	4	
다	55	0.21	2.5	
라	54	0.17	2	

- 적용시기: 2016년 3월 1일 이후 근무부터 적용

다. 교(원)감 경력점 산정 방법<2017.8.3.신설>

- ① 교(원)감의 전보서열부는 경력점을 산정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구 분	근 무 경 력 점					비고
	최초1년 기본점	2018.2.28. 까지		2018.3.1. 이후		
		월 가산점	1년 가산점	월 가산점	1년 가산점	
가	56.5	0.302	3.625	0.5	6	
나	56.5			0.34	4	
다	56.5			0.21	2.5	
라	56.5			0.17	2	

- 적용시기: 2018년 3월 1일 이후 근무부터 적용

## 2. 우대가산점(동일교 최근 5년 실적)

가. (삭제) <개정 2014.7.17.>

나. (삭제) <개정 2014.7.17.>

다. (삭제) <개정 2018.8.20.>

라. 포상 (동일교 최근 5년 최고 훈격 1개 인정) <개정 2019.8.19.>

훈 격 별	평정점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1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0.75
교육감 표창, 총(학)장 표창	0.5
교육장 표창	0.25

마. (삭제)

바. (삭제) <개정 2014.7.17.>

사. 발명교육센터 파견근무교원<신설 2018.2.5., 개정 2019.8.19.>

-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1년 0.5점)
- 적용시기: 2018.3.1.근무자부터 적용
- 2020.2.29.까지 발명교육센터 근무교원 실적 인정

아.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년 0.5점)

자. 6학년 담임교사, 1학년 담임교사 <신설 2014.7.17., 개정 2018.8.20.>

-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1년 0.6점, 월 0.05점)
- 적용시기: 2015.3.1.근무자부터 적용(6학년)  
2019.3.1.근무자부터 적용(1학년)

차. 통합학급 담임교사 <신설 2019.8.19.>

-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1년 0.5점, 월 0.04점)
- 적용시기: 2020.3.1.근무자부터 적용

카. 보직교사<신설 2020.8.19.>

-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1년 0.6점, 월 0.05)
- 1,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과 중복가능
- 적용시기: 2021.3.1.근무자부터 적용

타.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교원에게 1점 부여 <신설 2020.8.19.>

파. 대규모 학교(40학급 이상 또는 학생수 1,000명 이상)근무 보건교사 <신설 2020.8.19.>

- 1년 6점(월 0.5점)
- 적용시기: 2021.3.1.근무자부터 적용

**하. 단설유치원 근무 교원<신설 2021.8.19.>**

-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1년 0.6점, 월 0.05점)
- 보직교사 가산점과 중복가능
- 적용시기: 2022.3.1.근무자부터 적용
- 보건교사 제외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기간과 경력점 및 우대가산점은 현 근무학교 발령일부터 소급 산정한다.

제3조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전주시로 편입된 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편입된 날부터 시내 근무기간으로 산정한다(전주도강초등학교는 '95.1.1.부터).

제4조 본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당시 인사관리시행세칙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5조 본 인사관리기준 시행 초기인 1997년과 1998년에 개정인사관리기준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경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전라북도초등인사관리기준이 변경되어 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27.)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 17.)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경력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1-나. 보건교사 경력점 산정은 2014학년도까지의 경력은 유·초등교원 경력점 산정방법에 따르며, 2015학년도 경력부터 변경된 가산점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3-바. 교육실습협력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은 2014학년도 근무실적까지 인정한다.

별표 I 의 3-아. 6학년 담임교사 가산점은 2015년 3월 1일 이후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7. 21.)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안 경력점 산정 방법은 2016. 3. 1이후 근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5.)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8. 3.)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안 경력점 산정 방법은 2018. 3. 1이후 근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12. 26.)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전보대상)은 2018년9월1일자 교·원감 발령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2. 5.)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전보 경과조치)

제10조 ⑦ 동일 발명교육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자는 2018.3.1. 근무자부터 적용한다. 기존의 2018.2.28.까지 발명교실을 담당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발명교실 지도교사를 2년 이상 담임한 자로 동일교 근속년수 2년 이상인자도 우선전보를 인정한다.

제3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3-사. 발명교육센터 근무교원 가산점은 2018.3.1.근무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8. 20.)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가산점 경과조치)

별표 I 의 3-다. 교과전담교사 가산점은 2018학년도 근무실적까지 인정한다.

부 칙(2019.8.19.)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I>의 경력점 산정 규정은 2021. 3. 1.부터 경과조치 없이 시행한다.

부 칙(2020.8.19.)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19.)

제1조(시행일) 본 인사관리기준은 2022. 3. 1.부터 시행한다.

<표 1>

### 학교소재금지일람표

순	학교명	금지 및 조정일			순	학교명	금지 및 조정일		
1	금암초	2005.3.1. ㉔			21	삼천남초	2005.3.1. ㉔	2010.3.1. ㉔	2016.3.1. ㉔
2	금평초	2005.3.1. ㉔			22	서곡초	2005.3.1. ㉔	2010.3.1. ㉔	
3	기린초	2005.3.1. ㉔			23	서문초	2005.3.1. ㉔	2017.3.1. ㉔	
4	남초	2005.3.1. ㉔			24	서신초	2005.3.1. ㉔	2010.3.1. ㉔	
5	대성초	2005.3.1. ㉔			25	서원초	2005.3.1. ㉔		
6	대정초	2005.3.1. ㉔	2010.3.1. ㉔		26	서일초	2005.3.1. ㉔		
7	덕일초	2005.3.1. ㉔			27	서천초	2005.3.1. ㉔		
8	덕진초	2005.3.1. ㉔			28	송북초	2005.3.1. ㉔		
9	동초	2005.3.1. ㉔			29	송원초	2005.3.1. ㉔		
10	동북초	2005.3.1. ㉔			30	송천초	2005.3.1. ㉔		
11	동신초	2005.3.1. ㉔			31	신동초	2005.3.1. ㉔		
12	만성초	2005.3.1. ㉔	2016.3.1. ㉔		32	신성초	2005.3.1. ㉔	2019.3.1. ㉔	
13	만수초	2005.3.1. ㉔	2010.3.1. ㉔		33	아중초	2005.3.1. ㉔		
14	문정초	2005.3.1. ㉔			34	양지초	2005.3.1. ㉔	2014.3.1. ㉔	
15	문학초	2005.3.1. ㉔			35	여울초	2005.3.1. ㉔	2010.3.1. ㉔	
16	미산초	2005.3.1. ㉔			36	오송초	2005.3.1. ㉔		
17	반월초	2005.3.1. ㉔			37	온빛초	2015.3.1. ㉔		
18	북초	2005.3.1. ㉔			38	완산초	2005.3.1. ㉔	2010.3.1. ㉔	
19	북일초	2005.3.1. ㉔			39	완산서초	2005.3.1. ㉔		
20	삼천초	2005.3.1. ㉔			40	용덕초	2005.3.1. ㉔		

순	학교명	급지 및 조정일			순	학교명	급지 및 조정일		
		2005.3.1. ㉔	2010.3.1. ㉔				2005.3.1. ㉔		
41	용소초	2005.3.1. ㉔	2010.3.1. ㉔		61	평화초	2005.3.1. ㉔		
42	용와초	2005.3.1. ㉔	2010.3.1. ㉔		62	풍남초	2005.3.1. ㉔		
43	용흥초	2005.3.1. ㉔	2017.3.1. ㉔		63	한들초	2005.3.1. ㉔		
44	우림초	2005.3.1. ㉔			64	화산초	2005.3.1. ㉔		
45	우전초	2005.3.1. ㉔	2010.3.1. ㉔		65	효림초	2005.3.1. ㉔		
46	원동초	2005.3.1. ㉔			66	효문초	2005.3.1. ㉔		
47	인봉초	2005.3.1. ㉔	2010.3.1. ㉔		67	효자초	2005.3.1. ㉔		
48	인후초	2005.3.1. ㉔			68	홍산초	2016.3.1. ㉔	2020.3.1. ㉔	
49	장동초	2005.3.1. ㉔			69	새연초	2017.3.1. ㉔		
50	전라초	2005.3.1. ㉔			70	하가초	2017.3.1. ㉔		
51	전일초	2005.3.1. ㉔	2010.3.1. ㉔		71	화정초	2018.3.1. ㉔		
52	전주초	2005.3.1. ㉔			72	양현초	2019.3.1. ㉔		
53	조촌초	2005.3.1. ㉔			73	자연초	2021.3.1. ㉔		
54	중산초	2005.3.1. ㉔	2020.3.1. ㉔		74	효천초	2021.3.1. ㉔		
55	중앙초	2005.3.1. ㉔			75	전주유치원	2014.3.1. ㉔		
56	중인초	2005.3.1. ㉔			76	은샘유치원	2014.3.1. ㉔		
57	지곡초	2005.3.1. ㉔	2010.3.1. ㉔		77	풍남유치원	2014.3.1. ㉔		
58	진북초	2005.3.1. ㉔	2010.3.1. ㉔		78	아름유치원	2017.3.1. ㉔		
59	초포초	2005.3.1. ㉔			79	홍산유치원	2019.9.1. ㉔		
60	팔복초	2005.3.1. ㉔			80	새솔유치원	2021.3.1. ㉔		
					81	특수교육 지원센터	2014.3.1. ㉔		

· 학교에 소재하는 기관 급지는 학교소재 급지를 적용함